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9. 27 선고 2021나20732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

1. L
2. M
3. N
4. O

원고 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P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준기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

담당변호사 이수진, 최찬우

변 론 종 결 2022. 7. 19.

판 결 선 고 2022. 9. 27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가단140088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망 A의 소송수계인 L, M, N, O에게 각 33,250,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원고들의 주장

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한다.

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A은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조경석을 인도네시아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는데, 나중에 관련 판결 등으로 망 A이 아닌 피고에게 조경석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그렇다면 망 A은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지출한 결과가 되었고 피고는 그에 따른 이익을 누렸으므로,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 A 지출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.

2. 판단

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‘법률상 원인 없이’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. 오히려 을제 3,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망 A은 피고와 함께 조경석을 인도네시아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데 관여한 C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주장의 비용 지출을 일부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을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

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,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오성우, 판사 박이규